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310

발의연월일: 2024. 12. 9.

발 의 자:이광희·박수현·허성무

박해철 · 문금주 · 이기헌

주철현 · 강준현 · 박희승

송재봉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고, 피해학 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 시보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에 대한 조치 여부 결정이 학교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경우에 따라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에 대해 일정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1항).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보호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	
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	
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	
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	
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	
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	
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
	<u> 다</u>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